

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

■ 대상자 : 총 2 명(명단 첨부)

■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

구분	결격요건	검토결과
제 직 기 간	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	해당 없음
상 훈	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	해당 없음
징 계	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성희롱,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(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)	해당 없음
	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* 말소기간 : 불문경고 1년, 견책 3년, 감봉 5년, 정직 7년, 강등 9년	해당 없음
훈 계 등	훈계·경고·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	해당 없음
업 무 수 행 기 간	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(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) * 단, 사업으뜸이의 경우,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,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	해당 없음
퇴 직	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(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) * 단,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	해당 없음
기 타	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,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,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거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	해당 없음

※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

■ 공직선거법 검토(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)

사업명	검 토 내 용	검토결과
000 사업 유공표창	-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-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-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	(예시)적법

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년 11 월 13 일

확인자 (추천기관장)

장 형 순

